

보도시점

2026. 9. 1.(화) 17:00
< 9.2.(수) 조간 >

배포

2026.9.1.(화)

산업부-지재처, 업무협약 체결

산업기술·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맞손

- 지식재산권 전략과 연계된 산업기술 전주기 대상 지원·협력체계 구축 -

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)와 지식재산처(처장 김용선)는 9. 1.(화) 석탄회관(서울 종로구)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및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반도체·AI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. 이에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정책과 지식재산정책을 긴밀히 연계하고 관련 사업 간 협력을 강화하여,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함께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.

주요 협력 내용은 ▲산업기술과 지식재산 간 정책 및 사업의 연계, ▲산업기술 연구개발(R&D)과 지식재산의 연계 강화, ▲산업기술 및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·활용 촉진, ▲지식재산 기반 경제안보 및 국내외 기술 침해·분쟁대응, ▲인공지능 전환(AX) 관련 정책 등이며, 이외에도 양 부처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부처는 산업기술 전주기에 대해 지식재산을 접목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. 먼저, 연구개발(R&D) 단계에서는 특허 분석에 따른 IP 포트폴리오 설계를 통해 산업 R&D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. 사업화 단계에서는 양 부처 기술·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연계 및 해외특허 확보 지원 등을 통해 기술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. 마지막으로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·분쟁 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.

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“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, 그 성과가 빠르게 사업화됨과 동시에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”며, “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부처의 정책과 지원사업을 긴밀히 연계해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이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”고 밝혔다.

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, 이를 자금조달과 분쟁대응 등 사업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”이라며, “이번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강력한 지식재산 전략을 기반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부서	산업통상부 산업기술시장과	책임자	과 장	장미연 (044-203-4530)
		담당자	사무관	강승구 (044-203-4506)
	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한덕원 (042-481-5168)
		담당자	사무관	김용혁 (042-481-5429)



산업기술 및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 무 협 약 서

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는 산업기술 및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가 국가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,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우리 기업의 산업기술 및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사항)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.

- ① 산업기술과 지식재산 간 정책 및 사업의 연계
- ② 산업기술 연구개발(R&D)과 지식재산의 연계 강화
- ③ 산업기술 및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·활용 촉진
- ④ 지식재산 기반 경제안보 및 국내외 지식재산 침해·분쟁대응
- ⑤ 인공지능 전환(AI) 관련 정책
- ⑥ 기타 상호 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3조(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양 기관은 본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내용의 효율적 추진과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.

- ① 정책협의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상호 간 협의를 통해 수시 개최할 수 있다.
- ② 정책협의회는 제2조에 따른 협력사항을 논의하고, 기존 협의된 사항의 정상 추진여부를 점검한다.

제4조(비용부담)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·분담한다.

제5조(비밀유지) ① 양 기관은 상호 업무협조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상대기관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
② 양 기관 간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.

제6조(협의조정)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 차이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.

제7조(협약서의 효력)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,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②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협약서의 해지를 요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.

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(날인)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9월 1일


